

보상계획 및 열람공고

영동군 공고 제2022-1209호(2022.10.05.)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승인 고시된 『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』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토지보상법”)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03. 06.

한국농어촌공사 옥천·영동지사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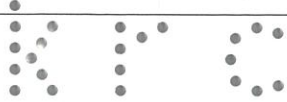


1. 사업의 개요

- 사업명칭 : 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- 사업시행자 : 영동군수 / (위탁시행) 한국농어촌공사 옥천·영동지사
- 사업위치 :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일원
- 사업목적 : 『자연재해대책법』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항구적으로 정비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보상대상 물건

보상되는 토지		보상되는 물건
토지소재지	지 번	
영동읍 가리	62-1, 56, 52, 61, 62-2, 50, 51, 산29, 산22-4, 49, 46, 45, 44, 43, 281, 40, 60, 981, 48, 47, 42, 산46, 40-1, 32-1, 57, 58, 산22-1, 32-4, 32-5, 29, 983, 30, 27, 54, 55, 982, 251-1, 산31, 259, 996, 249, 247, 243, 산30, 242, 235-3, 237, 236-1, 산29, 53, 41, 982, 39, 33, 산46, 31, 64-4, 64-3, 64-5, 64-1, 산22-4, 976, 91, 63, 90-2, 90-1, 81, 64-2	보상되는 토지 내 영농보상 및 지장물 등 일체



※ 보상되는 토지내 영농보상 및 지장물 일체 포함

※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.

5. 보상계획열람(이의신청)기간 및 장소

○ 열람공고(이의신청)기간 : 2023.03.08. ~ 2023.03.23. (15일간)

※ 열람기간 중 토요일,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
○ 열람장소 : 한국농어촌공사 옥천·영동지사 농어촌사업부
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, 2층 농어촌사업부
☎ 043)730-2564 Fax 043)731-6105

○ 이의신청 방법 :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.

6. 보상방법 및 절차

○ 보상시기 : 2023.03월경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 요청서 개인별 통지 예정입니다.

○ 보상절차

▷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토지 등의 감정평가 → 손실보상협의
→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

▷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▷ 보상금은 당사자와 보상협의를 성립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.

○ 보상금 산정

▷ 보상액의 산정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, 감정평가업자 3인이 (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 또는 토지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),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 협의합니다.

▷ 감정평가업자 추천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. 기간 내 추천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.

-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세부 물건조서를 개별통지 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.
-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보상일정 및 열람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,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